■ 법인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8호서식] (2023.03.20 개정)

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

※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1. 신청인

법 인 명		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자 성명		업 태 · 종 목	
소 재 지			

2. 환급신청 명세

①결 손 사 업 연 도	년 월 일 ~ 년 월 일	②직전사업연도	년 월 일 ~ 년 월 일

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	⑥결손금액	
	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	
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	⑧과세표준	
	⑨세 율	
	⑩산출세액	
	⑪공제감면세액	
	⑫차감세액(⑩－⑪)	
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	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(⑬＝⑩)	
	⑭차감할 세액[(⑧－⑦)×세율][⑭≧(⑩－⑫)]	
	⑮환급신청세액(⑬－⑭)(⑮≦⑫)	

국세환급금 계좌신고	⑯예 입 처	은행 (본)지점
	⑰예금종류	예금
	⑱계좌번호	

「법인세법」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법 인) (인)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)

세무서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작 성 방 법

1. ⑥결손금액란 : 「법인세법」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.
2.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 : 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,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.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 :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
4. ⑨・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.
5. ⑩산출세액란 : 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 :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(⑩산출세액란의 금액)을 옮겨 적습니다.
7. ⑭차감할 세액란
   가.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원미만 금액은 절사)을 적습니다.
   나.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.
8.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